



유권자가 참여하는  
희망의 선거

선거과정과 선거관리가  
공정한 선거

정당·후보자 모두가 승복하는  
화합의 선거

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,  
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방송



### 선거정보 확인하기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을  
방문하시면 자세한 선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

##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
선거일 투표 | 6월 1일(수)  
오전 6시~오후 6시

사전 투표 | 5월 27일(금)~5월 28일(토)  
매일 오전 6시~오후 6시

※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 
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#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

##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



<b>세종시(4장)</b>	교육감, 시장, 지역구시의원, 비례대표시의원
<b>제주도(5장)</b>	교육감, 도지사, 교육의원, 지역구도의원, 비례대표도의원

-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도 함께 실시
- 구·시·군의원선거(지역구)에서 중대선거구제(3~5인 선거구) 시범 도입 (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)
- ※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

**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**

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·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.  
 ※ 세종시와 제주도는 시·도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배정

# 선거권이 있는 사람

18세 이상(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)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

- 주민등록**  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재외국민**  
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외국인**  
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# 주요 선거일정



※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투표소에 가기 전, 꼭 확인해 주세요!

### 1단계: 후보자 정보 확인

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 방문  
정당·후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



- 거리 등에 게시된 선거벽보 살펴보기  
5월 21일(토)부터 거리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확인 가능



- 세대마다 전달되는 선거공보 살펴보기
  - 정당·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음
  - 선거공보 두 번째 면의 '후보자정보공개자료'에서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
  - 선거공보는 5월 22일(일)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

### 2단계: 정책과 공약 확인



- 정책·공약마당(policy.nec.go.kr) 방문
  - 정당·후보자가 제출한 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비교해보기
  -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갈 수 있도록 희망공약을 제안,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 만들기



- 후보자토론회 시청
  -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·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비교·검증
  - 토론회는 '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'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
  - ※ 토론회 미실시 선거: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, 구·시·의원선거, 교육의원선거



- 다양한 정보 확인
  - 방송·신문 등의 선거, 정치 관련 기사 확인
  -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, 공개장소 연설·대담 등 선거운동 살펴보기



## 유권자 선거참여

-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.  
(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)
-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(1인도 가능)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(5월 10일~5월 14일)를 하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##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

-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(5월 27일~5월 28일)과 선거일(6월 1일)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5월 25일)부터 선거일 전 3일(5월 29일)까지 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※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# 사전투표

- 일시** 5월 27일(금)~28일(토) 매일 오전 6시~오후 6시  
※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장소**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에서 확인 가능
- 준비물** 신분증과 마스크  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(단,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) 등

## 주의하세요!

-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!
-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. ※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

## 관내 선거인

자신의 자치구·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

-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(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)
- 2 투표용지 7장 받음(세종 4장, 제주 5장)
-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,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
- 4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

## 관외 선거인

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

-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

-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

- 2 투표용지 7장(세종 4장, 제주 5장)과 회송용봉투 받음

-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(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)



※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·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  
※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

# 선거일 투표



## 6월 1일(수) 오전 6시~오후 6시

※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지정된 투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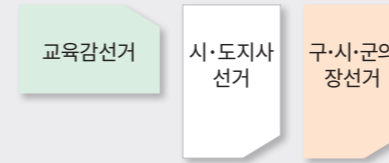
투표안내문 또는 '내 투표소 찾기'(nec.go.kr)에서 확인 가능

## 신분증과 마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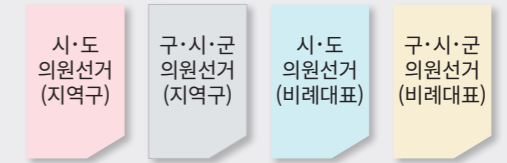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청소년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(단,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) 등

## 선거일에는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합니다.

### \* 1차 투표용지(3장)



### \*\* 2차 투표용지(4장)



※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

※ 세종) 일괄교부 4장: 교육감, 시장, 지역구시의원, 비례대표시의원

※ 제주) 1차 투표용지(2장): 교육감, 도지사 / 2차 투표용지(3장): 교육의원, 지역구도의원, 비례대표도의원



**주의하세요!**

-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!
-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.
- ※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

#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

투표용지는 재발급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!

## 유효표

**①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**

① ①표가 **일부분**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임이 명확한 것

② ①표 안에 **메워** 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

(장신오에 유효)      (최한양에 유효)

**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**

한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만 **2번 이상 기표**된 것

(안정최에 유효)

**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**

①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 **접선 하여 기표**된 것

②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**전사된 것**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

(박윤유에 유효)      (최한양에 유효)

## 무효표

**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**

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
※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

**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**

① 2란에 걸쳐서 **기표**한 것

② 서로 다른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 **2개 이상의 ①표**를 한 것

**①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**

① ①표를 하고 **문자**(좋다, 나쁘다, 공명선거 등) 또는 **물형**(○, □, V, X, △ 등)을 기입한 것

② ①표를 하고 선거인의 **성명**을 기입하거나, **인장의 날인** 또는 **무인**을 찍은 것



# 공정과 신뢰의 선거문화 조성

선거는 국가적으로 치르는 큰 행사로 사회각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

-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,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투·개표 사무 종사자,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·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.

\* 선거사무 필요 인력: 사전투표 약 10만 명,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, 개표 약 9만 명

\* 선거사무 필요 시설: 사전투표소 약 3,500 개소, 투표소 약 14,500 개소, 개표소 약 260 개소

**투표 및 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**

- 정당·후보자가 선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투표참관인 제도를 운용하며, 사전투표함 등도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정당·후보자가 선정한 사람, 일반유권자로 구성된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

**"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"**

**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,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!**

- 선거 관련 금전, 물품, 관광, 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**최고 3천만 원**
-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**최고 5억 원**

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**1390** ☎